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16562호, 2019. 8. 27. 공포, 11. 28. 시행)을 통해 도입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제도의 시행 이후에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재생사업 인정기준 구체화(안 제32조의2제4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정사업의 대상 지역을 활성화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제한하되, 안전위험건축물 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등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활성화지역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함.

다. 총괄사업관리자 범위 확대(안 제32조의3제1항)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의2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7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7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2조의2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비
하는 사업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업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전략계획수립권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
업으로 인정한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에 해당할 것

5.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32조의3제1항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를”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
른 지식산업센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분양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⑨ ----- 제8항까지 ----- ----- ----- -----.
<신 설>	⑧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생략)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⑩ (생략)

<신설>

<신설>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7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법 제2
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하
게 시행하는 정비사업

4. ~ 6. (생략)

②·③ (생략)

④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인정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신설>

아니한 사람

제32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주거
환경개선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조 제1
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아
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
지 아니한 도시재생활성화지
역의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

<신 설>

<신 설>

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12조에 따른 시설
물의 안전등급이 D 또는 E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정
비하는 사업

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
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
목 및 바목에 따른 정비사
업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빈집정
비사업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사
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전
략계획수립권자가 국토교
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할 것

5.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② (생략)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② (생략)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 또는 처분해야 한다.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등의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공급할 것
<단서 신설>

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32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등) 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생략) ④ ~ ⑧ (생략)	<u>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에 따른 분양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07